

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공동수급 협정서

제1조(목적)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지구에 대하여 지적측량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 ○○지역본부 및 주식회사 ○○○○가 재정·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, 장비 등을 동원하여 『○○지구 지적재조사사업』을 공동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1. 사업명: 2021년 ○○시(군, 구) 지적재조사사업 측량·조사 업무
2. 업무량: ○○개 지구, ○○필지(○,○○○㎡)
3. 사업비: 총 ○○억원정(₩○○○○○○○)
  - 지적기준점 측량비를 제외한 금액 중 주관사 65%, 협력수행자 35%
4. 사업기간: 지적소관청과 계약일로부터 3개월(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5. 시행기관: ○○시장(군수, 구청장)

제2조(공동수급체) ① 공동수급체라 함은 「국가공간정보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“한국국토정보공사”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의 “지적측량수행자” 2개 사로 구성되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.

가. 주계약자

- 1) 한국국토정보공사 ○○지역본부 (법인등록번호): 000000-0000000
- 2) 주소:
- 3) 대표자 성명:

나. 협력수행자

- 1) 주식회사 ○○○○ (법인등록번호): 000000-0000000
- 2) 주소:
- 3) 대표자 성명:

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계약자로 한다.

③ 대표자는 업무위탁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, 공동수급체의 권리 및 의무를 대행하는 권한을 가진다. 다만,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, 부도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잔여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한다.

제3조(공동수급체의 분담내용) ① 지적기준점측량은 발주 시 주관사가 수행하며,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업무에 대한 각 수행자의 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기준점·지구계 측량	일필지 측량	면적측정 및 계산	토지현황 조사서 작성	경계 조정·협의	확정 경계점 설치	경계 확정 측량	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	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	성과물 납품
주관사	협력수행자			주관사					

**가. 주관사(한국국토정보공사 ○○지역본부)**

- 1) 자료조사 및 계획준비
- 2) 기준점측량
- 3) 사업지구 내·외 경계측량(지구계 측량)
- 4) 경계조정 및 협의
- 5) 확정 경계점 설치
- 6) 경계확정측량
- 7) 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
- 8)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
- 9) 최종성과에 대한 지적소관청 검사 요청
- 10) 성과물 납품

**나. 협력수행자(주식회사 ○○○○)**

- 1) 임시경계점표지 설치
  - 2) 일필지 측량
  - 3) 면적측정 및 계산
  - 4) 토지현황조사서 작성
  - 5) 일필지측량 측량성과 및 산출성과에 대한 주관사 검증 요청
- ② 공동수급체의 협력수행자는 지적기준점측량 성과 인수일로부터 ○○일 내에 일필지 측량을 완료하여야 한다.
- ③ 임시경계점 표지는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(경계설정 기준)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, 락카페인트, 못 등의 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④ 임시경계점표지는 접근 및 표시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설치 또는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4조(효력기간)**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, 사업기간 종료 시 효력이 종료한다. 다만, 업무위탁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측량·조사와 관련한 권리·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.

**제5조(의 무)**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·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.

**제6조(공정보고)** 공동수급체는 사업지구의 공정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매30일 경과 시마다 지적소관청에게 문서 제출 또는 바른땅시스템 입력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계약이행 책임)**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업무위탁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
**제8조(하도급)**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지적재조사측량 및 부대업무를 하도급 할 수 없다.

**제9조(구성원의 참여지분 비율)** ① 공동수급체의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참여지분 비율은 지적기준점측량을 제외한 공정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가. (주관사) 한국국토정보공사 ○○지역본부: 65%

나. (협력수행자) 주식회사 ○○○○: 35%

② 제1항의 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, 해산,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업무위탁자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0조 (공동비용의 부담)**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참여지분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부담한다.

**제11조(권리·의무의 양도제한)**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**제12조(중도탈퇴에 대한 조치)**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.

가. 업무위탁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

나. 파산 또는 해산,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재조사측량계약서에 따라 해약한 경우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업무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.

**제13조(하자담보책임)**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지적측량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.

**제14조(구성원 상호간의 책임)** ① 구성원이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책임진다.

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**제15조(보칙)**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.

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·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부는 계약서 첨부용으로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.

2021년 월 일

◆ 공동수급업체 주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○○지역본부장 ○○○ (인)

◆ 공동수급업체 협력수행사 주식회사 ○○○○ 대표 ○○○ (인)